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 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등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54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044-202-8937)

참고 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 단속개요

- (단속기간) '25. 8. 11(월) ~ 9. 30(화)
- (단속현장) 총 1,814개

□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 ① (발주자별)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 586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 ②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 27개 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 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 ③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 보유 건설업체 27개社 토목건축공사업(종합) 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 ④ (공사공종별) 토공사 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 9건, 비계공사 8건, 가설휨스공사 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 순
- ⑤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 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 ⑥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 미통보 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 등

☑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 ▲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 ▲ (주)□□ : 원청인 (주)□□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주)◇◇건설에게 하도급(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참고 2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20	4	16	
	강원특별자치도	16	1	5	2	3	
	충청북도	18	-	2	-	2	
	충청남도	31	-	5	-	5	
	전북특별자치도	17	1	10	1	9	
	전라남도	42	-	1	-	1	
	경상북도	27	-	2	-	2	
	경상남도	31	2	18	8	10	
	제주특별자치도	14	-	-	-	-	
	공공 기관	소계	1,073	10	166	15	151
		한국토지주택공사	299	3	94	6	88
국가철도공단		348	-	6	-	6	
서울교통공사		83	-	-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18	-	-	-	-	
한국가스공사		45	-	4	-	4	
한국농어촌공사		30	6	22	7	15	
한국도로공사		42	-	12	-	12	
한국수력원자력		30	-	-	-	-	
한국수자원공사		50	-	18	-	18	
한국전력공사		28	1	10	2	8	

참고 3

건설현장 임금체불 · 산업안전 감독결과

□ **(총괄)** 총 100개 현장, 369개 업체 감독 총 1,169건 위반 확인

구분	위반사항	조치사항			임금체불	직접불 위반
		범죄인지	시정지시	과태료		
기준	956건 (325개소)	-	955건 (325개소)	1건 (1개소, 30만)	987백만원 (171개소)	65건 (65개소)
산안	213건 (70개소)	31건 (9개소)	89건 (48개소)	93건 (64개소, 1.3억)	-	-

□ **(임금체불)** 171개 건설업체(1,327명) 9.9억원* 임금체불 → 79개 건설업체 5.5억(615명) 청산완료 *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

□ **(임금직접불)** 65개 건설업체의 임금 직접 지급 위반 확인 → 임금 직접지급 시정조치 (개선 약속서 제출 및 3개월 후 확인)

주요 임금체불 등 사례

- ▲ 00(주):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라 재직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6백만원(34명)을 미지급
- ▲ 00건설(주): 타 현장 기성금 미수 등 경영상 이유로 임금 60백만원(20명)을 미지급
- ▲ (주)00기업: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 외 추가 휴일근로 수당 등 16백만원(50명)을 미지급
- ▲ (주)00건설: 형틀팀 노동자 6명의 '25.4~5월 임금 43백만원, 알폼팀 노동자 19명의 '24.10~'25.5 임금 257백만원을 각 공종 팀장에게 일괄 지급

□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 → 시정지시

- * 근로계약 미명시(15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145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4개소) 등
- ** 부산지역 00건설(주)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해 3년 내 동일한 내용 지적→즉시 과태료

□ **(산업안전)**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적발

○ 9개 사업장에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 입건

-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 64개 사업장은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적 분야 위반*으로 과태료 1억 3,049만원 부과

-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